

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☐ 인가 ☐ 등록 신청서			처리기간
			7 일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② 생년월일	
	③ 주 소	(전화번호:)	
④ 사 업 의 종 류		(운영형태:)	
⑤ 변 경 사 항	변 경 전	변 경 후	
⑥ 변 경 사 유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☐ 인가 ☐ 등록 를(을)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· 도 지 사 귀하			
첨부서류	1. 신·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.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, 영업소 및 정류소, 휴게실 및 대기실, 교육훈련시설,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	수수료	
		증차: 기본 5,000원 자동차 1대당: 2,000원 추가 운영시간: 1,400원 기타: 2,000원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